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9조(휴게시설)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9조(휴게시설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-11-24